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0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강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11.
3. 회부연월일 : 2025.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및 지원 사무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됨에 따라, 해당 사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반환공여구역이 현저하게 낙후된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지원 사무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함(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략)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1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¹⁾은 19부²⁾, 6처³⁾, 16청⁴⁾과 함께 「방송미디어

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6위원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등 3청이 있음.

현행법은 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⁵⁾ 이는 중앙행정기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때마다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그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임.

3)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4)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관세청·조달청,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소방청·중대범죄수사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산림청,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5)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⁶⁾,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사업지원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발전종합계획 대비 31.9%인 총 16조 2,661억원(국비 3조 9,326억원, 지방비 4조 5,509억원, 민간 7조 7,826억원)이 투자된바, 국비보조율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50%,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공원, 도로, 하천 용도)는 평균 67% 수준임.

발전종합계획개발 관련 사무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장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발전종합계획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는 미군기지 반환 및 처분, 토양오염정화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함.

이러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지원 정책 추진체계 분산은 관련 기관 간 협의 절차 등으로 종합적·체계적 수행이 어려운 문제, 반환공여구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공공개발계획 추진이 지연 또는 폐기되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⁷⁾

6) ‘반환공여구역’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함.

7) “반환공여지 개발 ‘그림의 떡’... 돌려받은 미군기지 99%가 산지”, 중부일보, 2023.3.13.,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현황 및 이슈”, 영남경제신문, 2024.7.28.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이에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속한 지역의 개발 및 지원 정책을 총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입법취지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이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이나, 이는 새만금·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이 ‘특정 지역’ 기반의 ‘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무를 전부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 시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2013년 9월 설립 당시 새만금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등 6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새만금사업 추진방식이 초기 개발의 위험을 모두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된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6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됨.

둘째, 정부조직 상 ‘청’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독자성이 높고 업무의 범위가 전국적 단위인 집행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관계법령상⁸⁾ 정책의 범위, 업무량⁹⁾, 관할권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설치·운영할 경우 연평균 166억 6,300만원¹⁰⁾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문 의 처
02)6788-5339

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요건) 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 행정기관의 기구 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9) 개발청의 주요 업무는 현재 행정안전부 1개과(균형발전진흥과)가 수행하고 있음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신설(안 제2조)	16,387	16,126	16,523	16,931	17,348	83,315	16,6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